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8. 29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.8.22. 차재홍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 : 2016.8.22.
- 다. 상정일자 :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6.8.29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차재홍 의원

가. 제안이유

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2012년 3월 16일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(안 제6조)
- 2)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고려사항(안 제8조)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반영(안 제10조)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·운영(안 제12~제17조)
- 5)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(안 제18조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(안 제19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조례안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 의거,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수립·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, 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, 「지방재정법」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을 분석평가 대상으로 하였고,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등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,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지급,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, 분석평가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법 제3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또한 법 제13조의2에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